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안 번호	1010
----------	------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함. (안 제3조)
- 나.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함. (안 제5조)
- 다. 신고의 접수·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안 제6조제1항)
- 라.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기준 설정. (안 제6조제2항)
- 마.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
- 2) 동법시행령 제10조(상금의 지급)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고) ①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품의 지급) ①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제6조 제2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구 분	포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하는 포상금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000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부과대상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

접수번호	제 - 호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접수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신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조치결과(※간략히 기재한다)	
[비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제 -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신고내용(간략히) :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